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easylaw.go.kr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법제처는 2008년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easylaw.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는 **2025년 1월 현재 서술형 279건, 사례형 18건 등 총 297건의 생활법령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령 정보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웹페이지** <http://easylaw.go.kr>. **모바일앱** Smart 생활법률』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입양

Q 일반양자 입양을 고려 중입니다. 양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무엇이며, 이미 성년이 된 사람을 입양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입양을 하려는 양부모는 성년자이어야 하며, 성년이 된 사람도 일반양자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가 될 사람은 양부모의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니어야 하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양부모 및 양자의 자격요건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6조).

-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제1항 참조).
 - 피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19세 미만)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때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제2항 및 제867조).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성년후견인이 입양하려는 것에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3조제3항).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민법」 제874조제1항).
-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합니다(「민법」 제877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71조제1항 본문).
 -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871조제1항 단서).
-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

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1조제2항).

피성년후견인 입양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동의

-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제1항 참조).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성년후견인이 양자가 되려는 것에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의 동의(「민법」 제871조제1항)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3조제3항).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입양에 대한 배우자의 동의

- 배우자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4조제2항).

Q 저희 부부에게는 친자녀가 한 명 있는데, 둘째를 친양자로 입양할 계획입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면 둘째도 법적으로 첫째와 동일한 지위를 얻게 되나요?

A 네, 친양자 입양을 하면 둘째 아이는 법적으로 첫째 아이와 완전히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생자처럼 기록되어 형제자매 관계는 물론 부양 및 상속 등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가 친자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혼인 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4조 본문).
 - 다만, 양부모가 혼인신고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4조 단서).

법적 혈족관계의 발생

- 친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촌수를 가지게 되며, 친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친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8 및 제772조).
-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후단).
- 친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깁니다(「민법」 제974조).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본문).
-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때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단서).
 - 친족관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인 혈족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의 혈족과의 근친혼금지 규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민법」 제809조제1항 참조).

가족관계증명서의 친양자 표시 여부

-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지면,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가 양부모의 자녀로 표시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6조제1항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단순히 자녀로만 표시되고, 친양자라는 사실은 별도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6조제2항 참조).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없고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참조).

Q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양부모의 나이 제한이 있나요? 저희 부부의 나이가 좀 많은 편인데, 혹시 불리한 조건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A 이전에는 입양하려는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여야 하는 제한이 있었으나, 올해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 상한선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양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이기만 하면 나이 차이에 관계없이 입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 양부모의 자격 요건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 양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
 - 양자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다음 내용의 범죄경력 없이 있을 것
 -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경력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경력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를 위반한 죄에 따른 마약범죄경력
 -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

보호대상아동 양부모의 직업 요건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보호대상아동 양부모의 교육이수 요건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 양부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양부모교육 이

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 양부모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 입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 입양아동 등 자녀의 양육방법
 -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Q 저는 어렸을 때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대상아동으로 지내다 입양되어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저를 낳아준 친부모님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친부모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며,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친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권자

-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함)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본문).
 - 다만,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단서).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

-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전자우편 주소 포함)

- 입양 배경에 관한 정보: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거주 지역명(「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의 명칭),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한 이유, 입양일 등
- 양자가 된 사람의 출생에 관한 정보: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 일시 및 출생 장소 등
- 입양 전 보호에 관한 정보: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및 종전의 「입양특례법」(법률 제19555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등
- 그 밖에 아동권리보장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입양정보 공개의 신청 방법

-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함)은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직접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이 경우 청구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정보를 통해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서
 -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

친생부모의 동의

-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 본문).
 -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 단서).
-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3항).

Q

제가 외국인 아내와 결혼했는데, 아내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정식으로 입양해서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외국인 아동을 입양하려면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아동의 출신국과 우리나라의 중앙당국 간 협의를 거쳐, 출신국의 입양재판을 받거나 우리나라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난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를 마치면 비로소 입양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의 신청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입양신청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의 신청을 받은 경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양부모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송부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 가정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직장·이웃 등을 방문·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조사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인이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신국 중앙당국에 송부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4항).

중앙당국 간 협의

-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등을 수령한 때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동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그 사실을 출신국 중앙당국에 전달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

- 협약 체결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 또는 그 밖에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에 따라 입양이 성립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출신국 법률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본문).
 - 다만,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이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도 친생부모가 입양에 따라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데 동의하면 양부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양부모의 친양자 입양으로의 효력 변경 청구에 따라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을 친양자 입양으로 전환하는 재판을 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단서).

- 협약 비체약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에 따라 입양이 성립되면 외국재판의 승인에 따른 요건(「민사소송법」 제217조)을 갖춘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출신국 법률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협약 비체약국인 출신국에서 입양재판 외의 방법으로 입양이 성립하면 양부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각각의 허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 위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양부모 또는 양자는 협약준수입양증명서, 출신국이 발급한 협약준수입양증명서나 입양증서 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재판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국내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

-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을 위해 입국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전단).
-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후단).

키워드 입양, 국내입양, 일반양자 입양, 입양 자격, 입양 절차, 입양 효과, 친양자 입양, 친생자, 보호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 입양, 정보공개청구, 국제입양, 입양 신청, 출신국, 아동권리보장원

